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호	18-29
--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사유

본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법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대한 일부개정으로
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삭제에 따른
관련 조항 정비, 기본법 제44조(복지위원) 및 제8조(복지위원) 규정이
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 시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로 이를 규정
하는 것이 실효성 없음.
- 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라 2014년
11월부터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위원이 포함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
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서 구성되어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어,
복지위원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되었음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4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합의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8. 2. 8. ~ 2. 28.(제출 의견 없음)
- 나. 부패영향자율평가(감사담당관)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평가(가정복지과)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8. 3. 2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